

현안분석 2014-02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나채준

Global KLRI,
Best Research, Better Legislation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4-02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나 채 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municipal regulations for
resolving regional economic failure

연구자 : 나채준(부연구위원)
Na, Chae-Joon

2014. 8. 13.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를 2014년에 10% 이상 줄이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편·부담을 주는 장애규제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법령의 수임(授任) 규정상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조례 등 자치법규에 위임된 위임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사항을 발굴하고 조례의 적법성·투명성과 현실 타당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정부에서 규제관련 법령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입법되는 법령 중 약 70% 정도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주요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활성

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도 철저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비를 활성화하고 정비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문제가 된 개별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현황과 자치법규 규제개혁의 필요성
 - 지역경제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 현행 조례 등 자치법규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중요성
 -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의 의미와 추진 방향
 -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문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법률분석 및 활성화 수단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법률 분석 및 문제점 제시

- 현행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
- 현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경제분야 규제조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과 자치법규, ② 지역축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③ 지역 농산물 판매 지원 관련 자치법규, ④ 투자기업유치와 자치법규, ⑤ 지역문화제 활용과 자치법규에 대해 검토

□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방안

- 자치법규의 본질과 자치사무의 한계를 고려한 정비방안 제시
- 과도한 규제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방안 제시
- 자치단체의 소극적 규제개혁에 대한 방안 제시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규정한 조례의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조례상의 규제 실태를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기초를 마련함.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유형화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

▶ 주제어 :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법규, 전통시장, 지역축제, 투자 기업유치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To improve the site experience of regulatory reform, central government reduce restrictions contained in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including more than 10% in 2014.
- Not only inconvenient regulations but also local government laws and regulations that time is not enacted and amended by the amendment of the parent statute or ordinance tha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without statutory has been found to the problem.
- In reality, unreasonable regulations must first delete however ordination on regulatory reform and regul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to alleviate much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implification or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mandate in government regulations, including regulations delegated legislation, requires the study of ways to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such as excavation of these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legality, validity reality.
- Government strengthen the efforts to improve the regulatory legislation but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because delegation legislation's main content is almost 70% in the last legislative. And necessary to improve the local regulations reform for effectiveness regulatory reform to economy activity.

- Particularl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reform, as well as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unreasonable restrictions on government regulations, including regulations as well as laws regulating the legislative activate the service through this study and that can be helpful in the maintenance process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baseline.
- This study present for purposes of improving and reforming issues such as the problems found on the government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such as bylaw regulations to reflect the policy stance of the regulatory reform for the local economy of the government, and hinder national economic activity.

II . Main contents

- Current Statement of regional economy and the necessity of reforming government regulations Regulatory
- Current Statement of regional economy and the necessity of reforming government regulations Regulatory

- Meaning and direction of promoting regulatory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
- Review for improvement, such as government regulations
- Activaion policy of regional economic and analysis of laws and activation means
 - Activaion policy of regional economic and legal analysis and issues
 - Presenting the problem in the current regional economic policy
 - Presenting the problem in the current economic regulatory barriers to local regulations and economy
 - Analysis of utilizing local economy means
 - To stimulate the local economy in ① local regulations for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business support case ② local regulations for local festivals, ③ local regulations for sales support of local agriculture produce, ④ local regulations for companies investment attract, ⑤ local regulations for local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 Maintenance Plan for Local Regulations such as an ordinance
 - The proposed maintenance plan Considering the nature of Local Regul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 affairs
 - Proposed maintenance plan for excessive Local Regulations
 - Proposed measures for the negativ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

- Maintenance plan proposed regulations set forth the means of the local economy

III. Expected benefits

- Check the status on the actual ordinance regulating through the investigation aspect of revitalizing regional economic and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law established for regulatory reform
- Providing a basis data for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at enable them to typify the means of regional economic research.

▶ **Key Words** : Local economic activation, Local Regulations, Traditional markets, Local festivals, Attraction of investment company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1. 연구방법	16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17
제 2 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19
제 1 절 지역경제 현황	19
1. 지역경제 현황	19
2.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21
제 2 절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법률 현황	21
1.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21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현황	23
3.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29
제 3 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32
1. 규제개혁의 의미	32
2. 규제의 유형과 규제개혁	34

3. 자치법규 규제개혁의 필요성	36
4. 자치법규 규제현황	40
제 3 장 지방경제 활성화 사례와 자치법규의 문제점	47
제 1 절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47
1.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과 자치법규	47
2. 지역축제 활성화와 자치법규(166건)	54
3. 지역 농산물 판매 지원 관련 자치법규	58
4. 투자기업유치와 자치법규	61
5. 지역문화자원 활용과 자치법규	64
제 2 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자치법규의 문제점	69
1.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의 본질적 한계	69
2. 과도한 자치법규 규제	71
3. 소극적 규제개혁의 문제	72
4.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74
5. 사례별 문제점	76
제 4 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85
제 1 절 자치법규 본질을 고려한 정비방안	85
1. 자치법규의 위상강화	85
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 분석 강화	85
3. 지방규제등록 의무화	87
제 2 절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87
1. 규제조례 일몰제	87
2. 규제 등급제의 실시	88

3. 지방규제 총량제의 도입	89
제 3 절 소극적 규제개혁에 대한 개선방안	90
1. 정보공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	90
2. 면책제도 및 감사제도 활용	91
제 4 절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1
제 5 절 분야별 개선방안	92
1.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 개선방안	92
2.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개선방안	96
3. 지역 농산물 판매 조례 개선방안	98
4. 기업유치 조례 개선방안	99
5. 지역문화자원 활용 조례 개선방안	103
제 5 장 결 론	109
참 고 문 헌	111

【부 록】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황	117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121
3.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조사	151
4. 화천군 산천어축제 지원 조례	155
5. 군산시 기업투자유치 지원 조례	16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를 2014년에 10% 이상 줄이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14. 4. 7.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 등).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가 제때 제정·개정되지 못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령의 수임(授任) 규정상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조례 등 자치법규에 위임된 위임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사항을 발굴하고 조례의 적법성·투명성과 현실 타당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규제관련 법령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입법되는 법령 중 약 70% 정도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주요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법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도 철저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비를 활성화하고 정비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문제가 된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확립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③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유형별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규제개혁 통한 주민의 불편이 없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은 ① 국내·외 문헌연구 및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수집,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 ③ 전문가 그룹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문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 개최, ④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실무담

당자와의 자문 및 협의 등의 방식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 대한 국내문헌의 검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질과 정책반영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규제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등 실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보고서의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적용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이 연구의 내용은 제2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법규의 상관성에 대해 서술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주된 연구범위를 조례로 한다.¹⁾ 지역경제 현황과 활성화 수단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서술한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현행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 사례와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과 자치법규, ② 지역축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③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 ④ 투자기업유치와 자치법규, ⑤ 지역문화제 활용과 자치법규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자치 법규의 문제점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의 본질적 한계, 과도한 자치법규의 규제, 소극적 규제개혁의 문제,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사례별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 4 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이 필요성함을 강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

1) 그 이유는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지만 규칙은 국가가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역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규제적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제1장 서론

책의 개선방안 및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적 측면과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주로 규제완화가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자 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 2 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제 1 절 지역경제 현황

1. 지역경제 현황

통상 ‘지역’의 범위는 행정 단위인 시·도(광역지자체)와 시·군·구(기초지자체)를 기본으로 하고 현행 지역발전정책상의 지역인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개념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특정지역에서 기업과 가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행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들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인 생산, 소비, 투자활동을 포함한다. 지역경제는 소득과 고용을 중요한 요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경제의 중심에는 기업과 가게 등의 경제주체 상호간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지역은 농어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지역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등 쇠퇴하고 있고 지역 생산과 일자리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1,700여개 중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508개(30%)에 불과하고, 매출액 100대 기업 중 13%만이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지역의 경우 일자리 부족현상은 소득창출 기회에 부족으로 이어지고 지역 인구유출로 악순환 되는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 2012년도의 경우 16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은 1,275조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33조원(2.7%) 증가하였다. 시도별 규모는 서울(289조원), 경기(251조원), 충남(89조원) 순이며, 제주가 12조원으로 가장 작았다. 실질 성장률의 전국 평균은 1.9%로 제주(5.3%), 울산(3.6%), 충남(3.4%) 등이 농림어업, 제조업, 운수업 등의 증가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전북(-0.6%),

2) 2014.03.12, 관계부처합동회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광주(0.7%) 등은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의 부진으로 감소하거나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³⁾

<표 1> 지역별 지역총생산

[단위 : 당해년 가격기준, 10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829,468	869,305	912,926	983,030	1,028,500	1,065,665	1,172,742	1,241,582	1,274,989
서울	198,926	208,899	220,135	236,517	248,383	257,598	271,649	282,945	288,626
부산	45,984	48,069	49,434	52,680	56,182	55,526	59,531	62,129	63,564
대구	27,715	28,756	30,244	32,261	32,714	32,797	35,632	37,453	38,751
인천	38,842	40,398	43,311	47,780	47,827	50,256	56,857	59,166	60,635
광주	17,392	18,896	20,299	21,281	21,745	22,066	25,140	26,192	26,770
대전	19,314	20,030	20,802	22,186	23,218	24,211	26,413	27,800	28,675
울산	40,947	41,697	43,214	48,059	52,408	51,271	59,160	68,398	70,648
경기	162,200	169,315	180,852	193,658	198,948	208,296	232,429	243,836	250,857
강원	22,452	23,015	24,133	25,989	26,311	27,348	28,829	30,218	31,361
충북	26,213	26,721	27,997	30,001	30,105	32,175	36,233	38,758	39,502
충남	43,706	47,497	51,361	55,148	57,974	65,134	76,354	84,882	89,092
전북	24,548	25,221	26,488	28,586	29,471	31,855	34,643	37,985	38,389
전남	39,706	42,816	42,182	47,021	52,387	51,048	58,750	62,322	64,587
경북	58,734	61,757	62,643	63,969	67,712	69,223	78,314	81,322	83,238
경남	55,268	58,251	61,735	69,157	74,280	77,213	82,341	86,919	88,316
제주	7,523	7,966	8,096	8,736	8,833	9,648	10,469	11,258	11,978

출처 : 통계청

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 e-나라지표 홈페이지 자료 참조. (2014.09.30.기준)

2.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를 증진하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도권에 경제력 집중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지역간 경제력의 양극화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제적 상황은 더 어렵다. 정부는 지방의 활성화, 국제화, 지역혁신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과가 미흡하다. 그동안 정부가 광역경제권 등 대규모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유인에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중앙과 지역간의 비정상적인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국토개발과 지역간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편차와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효율적 실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제 2 절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법률 현황

1.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도권 특히 서울중심의 개발이 지역간의 경제불균형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경제 발전과 지역투자 결핍들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동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선택하

고 있으며,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하나는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주도 발전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지역발전 전략들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재정 및 조세지원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지원방안이다.

(1)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정책 재편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과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정책을 마련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전국 191개 시·군은 인구, 생활권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의 생활권으로 나뉘고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20개), 농어촌지역이 연계된 농어촌 생활권(21개), 별도의 시범생활권 2개를 지정하였다.⁵⁾ 지역발전 정책의 적합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5개 시·도에 각각 1개씩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테마 경제권’을 구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2) 지역도시 재생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

정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 11곳을 선정하여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지구는 노후 향만 및 역세권의 경제기반형 2곳(250억 지원)과 쇠퇴상권 및 인근 주거지역의 근린생활형 9곳(60억 ~ 100억 지원)을 지정할 계획이다.⁶⁾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예상된다. 2013년 창원시와 청주시

4) 국토부 등 정부부처 합동발표, 2014. 3. 12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참조.

5) 각 지자체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모두 2천146건의 사업을 접수하였고 이들 사업 중 별도로 올해 선도사업 신청을 받아 전국적으로 총 사업비 715억 원(2014~2016년, 국비 90%, 시비 10%)에 36개의 선도사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6) <http://koreablog.korea.kr/310>. 위클리공감 249호 참조.(2014. 9. 30)

의 통계를 보면 도시 재생사업 1억원 당 4.3명 일자리 창출, 건설명 1.4명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지역 상품개발은 물론 각 지역을 시, 도별 테마 경제권으로 나누어 중점사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 문제점

그동안 정부는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직된 방식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지역의 특성보다는 정치적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유인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주민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법의 테두리안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현황

현행 법령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이 있다. 이들 법률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다.

7) 위의 홈페이지 참조.(2014. 9. 30)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2004년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한바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 및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쟁은 물론 지역도 경쟁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⁸⁾ 동법은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균형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초광역경제권(동법 제5조의2), 광역경제권(동법 제6조) 기초생활권(동법 제7조의2)의 권역별 발전 전략을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동법 제22조), 동법 제28조에는 광역경제권발전을 권역별로 규정하고 있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동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⁹⁾

8)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2 제1호).

9) 동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일반적 규정 특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그리고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에 규정된 사항(제2항)을 말한다.¹⁰⁾ 동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4조), 특구계획에는 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 및 그 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규제특례사항 등(동법 제7조 1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동법 제17조 이하에서 정하는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제17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2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제30조)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말하고(제2조 2호), ‘지역개발계획’이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국토기본법상의 도·시·군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제2조 1호)을 말한다.

10) 강기홍,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제의 발전, 2012. 6, 56면 참조

(4) 관련 법률

1) 관광산업진흥관련

① 관광진흥법

동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광사업,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¹¹⁾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계획, 회계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기금의 용도(제5조)규정을 두어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11) 동법 제5조(유원시설업 허가)에서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광지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단지는 총면적 1백만㎡ 이상이며,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휴양·놀이운동시설, 접객시설을 갖춘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2조). 관광단지 개발의 편의성을 위하여 관광지 등의 인·허가 등의 의제(제58조)규정을 두어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지형도면의 승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 상수도설치시설 인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등 21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광사업을 하는 지자체,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제76조) 규정을 두고 있다.

2) 지역개발 관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동법 제6조, 제36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6조).

② 농지법

동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제31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3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농어촌정비법

동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념정의(제2조)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제6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규제 관련

①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의 세목(제5조),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감면(제277조)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동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지역발전입법의 문제점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실시된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지역특구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소득발생과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¹²⁾ 4개 사업 중 3개 이상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37개 기초생활권에서 2000년 기준 2008년의 소득이 상승한 지역은 3개 지역, 명확히 하락한 지역은 7개 지역, 예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하락한 지역은 27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¹³⁾ 그 이유는 개발촉진사업의 하나로 관광휴양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민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¹⁴⁾ 이것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각 사업의 자원조달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고려 없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¹⁵⁾

12) 강기홍, 앞의 논문, 60면 참조

13) 이순배·이현우, 기초생활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소득발생과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재정정책논집 제13집 제1호, 2011, 92-100면 참조.

14) 홍성우·김광구·한상연,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국토계획 제42권 제7호, 2007, 91면 참조

15) 이순배·이현우, 위의 논문, 107-108면 참조.

3.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지역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다양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② 지역축제를 활용한 지원, ③ 지역 농산물 판매 지원, ④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투자기업유치, ⑤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1)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시장 경영진흥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수는 1,517개에 이르고 점포수는 약 20만1천개, 상인 수는 약35만9천명에 이른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은 유통산업 시장개방으로 선진외국의 유통업체와 경쟁을 하여야 하고 주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과도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전통시장은 도심 및 변화가지역 혹은 주거 밀집지역에 입지하여 개발 잠재력이 크고 토지 가격이 높은 반면에 토지이용 효율은 낮다. 점포시설 및 설비가 노후화되고 시장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부대시설이 거의 없고 시장 환경이 열악하여 미관상의 문제도 존재한다.¹⁶⁾ 주변교통체계도 혼잡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대부분이 임대점포들의 집합체여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비해 영업효율성도 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침체와 지역 상권의 붕괴는 경제구조의 왜곡으로 지역의 경제를 침체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빈곤층의 확대 및 실업의 문

16) 한광수·박인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3. 6, 467면 참조.

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 지역축제 활용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5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 169개(1996년-2000년), 176개(2001년-2005년), 187개(2006년-2010년)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업적만들기나 인기 등 여론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그 수단으로 지역축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일반적 현상이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축제관련 지역산업을 살리고 신규고용의 창출하여 지역의 생산성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전국 축제 수는 758개이며 서울 113개, 경남 85개, 강원 78개 등에 이르고 그 유형도 문화예술형(32.7%), 특산물(24.8%), 전통·역사(13.9%)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3) 지역 농산물 판매 활용

최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향토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농산물 판매이다. 지역 특산물을 포함한 향토자원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향토산업을 육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화한 2차산업, 그리고 제품들을 전시하고 자랑

하기 위한 관람형 축제개최를 통한 관광서비스산업 등 3차산업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¹⁷⁾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색이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 투자기업유치

현재 지역간 경제적 양극화 현상, 즉 수도권 경제와 지방경제간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지난 10여 년간 생산과 일자리 증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최근에도 일부 지역은 생산·취업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¹⁸⁾ 일자리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득창출의 기회가 부족해지고 결국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침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기업의 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가는 물론 지역의 경제발전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그 국가 또는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가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가나 지역은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지역 내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지역문화자원 활용

지역은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관습과 문화 속에서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특정 지역 내에 축적된 관습이나 생활습관 등 지역 문화가 타 지역과 구별된다.

17) 김종갑 외 3인,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08. 12, 2면 참조.

18)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014. 3. 12, 보도자료, 1면.

이를 일컬어 향토문화라고 하고 향토라는 단어에는 지역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내포하고 있다.¹⁹⁾ 지역문화자원은 지역적 차별성인 지역성과 역사적 차별성인 전통성을 가지는 그 지역사회의 유형 및 무형자원이다.²⁰⁾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은 역사 및 문화의 소산이 되는 자원으로 여기에는 문화유적, 사적(史籍), 판소리, 문화·예술인사 관련 유적 등이 해당하고 넓게는 생태 및 자연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는 빼어난 경관을 지닌 하천, 갯벌, 바다 등의 장소나 희소가치가 있는 동식물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²¹⁾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참관자가 직접 문화 체험을 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 3 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의미

‘규제’(regulation)의 의미는 다양하나 법률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규제기본법 외에 수많은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규제를 규정하고 있다.²²⁾ 이처럼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규제에 대한 남용을

19) 김종갑, 위의 보고서, 24면 참조.

20) 유형문화자원은 지역성이나 전통성을 포함한 물질형태의 자원을 말하고, 무형 문화 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행하여진 생활양식, 놀이, 전통지식, 전설, 민요, 지역 축제 등을 말한다.

21) 김종갑, 위의 보고서, 24면 참조.

22)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이용에 대한 용도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법률에서는 환경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²³⁾ 또한 ‘개혁’이란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은 규제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규제의 틀을 전환하는 것으로 사실상 규제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를 개혁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합리적인 규제의 강화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이해하여야 한다.²⁴⁾ 따라서 규제개혁은 규제의 질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규제의 양을 줄이는 규제완화라는 용어 보다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규제개혁에는 규제완화는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규제를 비규제적인 정책수단 또는 양질의 규제수단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⁵⁾

정부는 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규제영향평가제 강화 및 규제 강화에 따른 입법절차 강화 등을 추진 중이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입법취지는 첫째,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

23) 행정기본법 제 4 조 (규제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24) 김수연,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의 역할과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자료집, 2014. 7. 15, 12-13면 참조.

25)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저스티스 106호, 한국법학원, 2008. 410면.

26) 행정기본법 제 5 조 (규제의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제는 법규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사문 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는 안되는 규제 순응성, 실효성, 둘째, 규제의 대상 및 수단은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보유해야 하며, 셋째,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현상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해야 할 만큼의 시의성과 불가피성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²⁷⁾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범위를 시행령²⁸⁾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규제에 대한 심사 등 규제완화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규제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유형별로 제시하여 규제개념의 추상성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규제의 유형과 규제개혁

규제의 유형도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① 경제적 규제, ② 사회적 규제, ③ 행정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²⁹⁾ 현재 규제개혁차원에서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7) 최철호, 자치법규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71면 참조.

28)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9) 최철호, 앞의 논문, 71면 참조.

규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³⁰⁾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데 2013년 말 현재 15,269건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각 부처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이 미흡한 편이다.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 효과가 반감되므로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위임규제와 관련된 조례·규칙을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97개의 자치법규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³¹⁾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 단독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 자치법규 운영현황 조사결과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조사대상	483	42	33	36	27	31	31	32	35	32	23	26	40	26	21	24	24
정비대상	97	7	2	12	4	12	6	4	9	6	3	7	8	5	3	5	4

출처: 규제개혁위원회, 2013규제개혁백서

30) 규제개혁위원회, 2013규제개혁백서, 79면 참조.

31) 규제개혁위원회, 2013규제개혁백서, 79-80면 참조. 정비대상이 되는 유형은 ① 규제개선 사항 미반영(15), ② 위임사항 미규정(54), ③ 근거법령과 상이한 규정(15) 등이 있었다.

3. 자치법규 규제개혁의 필요성

(1) 자치법규의 개념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³²⁾ 자치법규는 주민의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립적으로 만든 법규범으로 법규명령 등 행정입법과는 다르다. 또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도 행정입법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않고 개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³³⁾ 자치법규중 규제의 성격을 띤 사항은 주로 ① 지역산업진흥, 지역발전 및 투자유치, ②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환경 및 교통, ③ 도시계획, 주택·건설, 소방·재난방지와 상수도에 관한 사항 등 3개 분야에 분포하고 있다.³⁴⁾

32) 신원득 외,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9, 12면 참조.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안에서 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33) 신원득, 위의 보고서, 11면 참조.

34)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지자체 규제 현황 파악 및 개선체계 구축-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2012, 23-25면 참조.

<표 3>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법령구분	내 용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리 설치·운영 - 행정동·리의 하부조직 - 사무소 소재지 변경, 설치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범위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 지방의회 위원회의 설치 -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구성 - 의회의 사무직원 정수 - 사무의 위임, 위박 - 소속직원의 임명권 - 정무직·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자격기준 - 직속기관의 설치 - 사업소의 설치 - 출장소의 설치 - 합의회 행정기관의 설치·운영 -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 - 지방채무이행, 채권관리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 - 사용료, 분담금 포탈자에 대한 과태료 - 재산의 보유 및 기금설치 - 공공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2 제1항, 제2항 제4조2 제5항 제6조 제1항 제35조 제6항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62조 제90조 제1항, 제2항 제91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05조 제110조 제2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항, 제2항 제116조의2 제1항 제124조 제4항, 제5항 제139조 제1항 제139조 제2항 제142조 제2항 제144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2조 제33조

제 2 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법령구분	내 용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지방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기준 -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운영 -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의 선임 	제34조 제10항 제3조 제1항, 제6항 제52조 제54조 제5항 제83조 제1항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3조 제6항
지방공무원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임용권의 위임 -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 지방공무원 실비보상 - 지방공무원 복무선서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 지방공무원 표창 	제6조 제2항 제7조 제6항 제14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58조 제7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 임용시험 시험위원 등의 수당·여비	제48조 제5항

<표 4> 법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법령구분	내 용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 내부운영 -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제43조 제7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 청원에 관한 필요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 	제28조 제5항 제57조 제3항 제60조 제70조
지방 공무원법	- 제안제도의 운영	제78조 제3항

법령구분	내 용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겸임자의 직급 - 다면평가의 방법·절차·평가결과활용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신규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 특별임용요건의 세부사항 규정 - 특수지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 - 민간근무휴직에 관한 사항 -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 제1항, 제2항 제7조의5 제4항 제8조의4 제4항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5항 제33조의7 제5항 제52조 제55조의 3 제3항

(2) 지방규제 규제개혁의 중요성

지역은 지방의 자치법규상의 규제가 직접 시행되어 자치법규상의 규제가 지역의 주민의 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법률로 중앙정부 규제의 세부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으며,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있어서 지방의 규제개혁은 중요하다.³⁵⁾

지방규제 혹은 지방자치단체 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고 있는 조례·규칙 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하고³⁶⁾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

35) 최철호, 자치법규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72면 참조.

36)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지자체 규제 현황 파악 및 개선체계 구축-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2012, 23면 참조.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다. 지방규제에 관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규제 즉,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은 ①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해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의 효과가 저하되는 한계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정비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 ②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없이는 국민의 규제체감도 제고 및 국가적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는 점, ③ 지방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부처의 편의에 맞게 규제가 제정·운용되는 경우 이로 인한 비현실적 규제, 저품질 규제, 중복규제 등의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³⁷⁾

4. 자치법규 규제현황

(1) 규제실태 및 지방규제 등록건수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조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과 절차,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제6조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규제등록포털)에 등록 및 공표하여야 한다. 2014년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는 46,824건이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약 192개인 셈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4.57%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전남, 경북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는 중앙부처 등록규제 15,124개의 3배를 상회하

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2013, 24면 참조.

고 있는 수준이다.³⁸⁾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하여 조례와 규칙 중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85% 이상 차지하고 있다.³⁹⁾ 2013년 규제개혁백서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15개, 자치법규에 규제기준을 위임하였으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례가 54개, 근거법령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예가 17개 등으로 조사되었다.⁴⁰⁾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4개월간 전국의 244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0개 (총 22건)의 조례·규칙이 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일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⁴¹⁾ 또한 지방규제와 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 등록된 지방규제의 유형 및 규제적 자치법규의 특징

등록된 지방규제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각 부처가 만든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대부분으로 조례가 86.2%, 규칙이 11.0%를 차지하고 있다.⁴²⁾ 내용을 보면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규제가 가장 많고 환경, 주택 및 건축, 도로에 관한 규제가 40%이상을 차지하고

38)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규제등록현황, 2014. 9. 30 자료 참조.

39) 위의 사이트, 규제등록현황 2014. 9. 30 자료 분석.

40) 규제개혁위원회, 2013규제개혁백서, 79-80면 참조. 대표적 사례로 ①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기준을 500㎡에서 3,000㎡로 완화하였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② 지방의료원설립·운영법에서 위임한 지방의료원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③ 도시재정비 기반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율을 계산할 때 다른 계산방식을 적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41) 해당 22건의 규제적 자치법규를 내용적으로 ① 상위법·시행령 등을 미반영한 조례·규칙(8건) ②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조례에 위임했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8건) ③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지자체 규제(4건) ④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애로(2건)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42)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규제등록현황 2014년 4월 통계자료 참조 (2014. 4. 30. 기준)

있다.⁴³⁾ 이것은 지역개발이나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규제 중 90%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이고, 자치사무에 대한 규제의 신설은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⁴⁴⁾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의 개선은 자치법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치법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정비도 필요하다.

(3) 기업활동 장애와 자치법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한 보고서⁴⁵⁾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40.0%가 규제강도가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높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①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② 법적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치법규에 반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심각하다. 이를 반영하여 박근혜 정부는 감축해야 할 규제를 현재 규제 총수의 20%로 설정하고, 그 대상으로 사회안전이나 질서유지 등에 관련된 규제보다는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경제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 유형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에는 ① 주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사업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사업제한, 과잉규제),

43) 위의 사이트, 규제등록현황 참조, (2014. 4. 30. 기준)

44) 안전행정부, 지방규제완화 3차 보고회의 자료, 2013. 9. 30.

45)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7월 16일에서 9월 25일까지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② 지역특성(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입법된 자치법규, ③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충돌하는 자치법규, ④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⑤ 상호 충돌·모순되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⑥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자치법규, ⑦ 상위법령 정비·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등을 들 수 있다.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보면⁴⁶⁾ 첫째, 국가의 법률·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미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의 용도지역 중 하나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업종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업종에 따른 입지제한의 근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건폐율 상한기준이 80%이나, 6개 지방자치단체는 70%로 정하고 있고, 1개 지방자치단체는 60%로 제한하는 사례와 소규모 건축물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5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⁴⁷⁾

셋째,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련 조례의 폐지 권고 등으로 환경보호 등을 사유로 법령의 근거 없이 특정업종의 공장입지를 사전적,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상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추천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⁴⁸⁾

46) 최철호, 앞의 논문, 79면 이하 참조

47) 김현호·박해육,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박근혜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추진 전략 세미나 자료집, 2014. 4. 29, 22면 참조

48) 김현호·박해육, 위의 발표자료, 22면 참조

(5)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자치법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이다. 안전행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기업규제 수준등을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평가·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규제를 도모하며 지역기업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는 사실상 그 배경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많다. 그런데 그러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회가 만든 조례와 규칙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라고 나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를 해당 자치법규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유형

첫째, 직접적인 진입규제, 가격규제로 이러한 규제를 정한 자치법규는 많지 않다. 모든 직접규제는 헌법상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규제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생협력, 소상공인보호 규제, 여객자동차관련 법규, 지역건설산업보호 등이 해당한다.

둘째,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로 주로 지원 관련 자치법규에 많이 나타난다. 내용으로 보면 규제가 아니지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나 대상을 우대하여 다른 업체에게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다. 자치법규에서 특정업체를 지원이 필요한 단체로 지정하고 지정 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원 내용을 R&D 등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을 직접 보조하는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⁴⁹⁾

49) 김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3.10, 요약문 참조.

제 3 장 지방경제 활성화 사례와 자치법규의 문제점

제 1 절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1.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과 자치법규

(1)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치법규

1) 전통시장 현황

시장 경영진흥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 현황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수는 1,517개, 점포수는 약20만1천개, 상인수는 약35만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의 자기소유 점포는 45,234개에 불과하고 임차 점포가 129,96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빈 점포가 21,811개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소유 점포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대다수가 점포임차상인 및 종업원, 노점상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의 상인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영세상인인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대비 2010년의 전통시장의 수는 93개가 감소하였고, 점포수도 24,367개가 감소하였으나 종업원 및 노점상인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현대화사업 시행 이후에도 전통시장의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표 5> 연도별 전통시장 상인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상인수	종사자*				노점상인
		소 계	점포소유 상인	점포임차 상인	종업원	
2006년	352,646	301,581	64,942	131,021	105,618	51,065
2008년	362,960	296,005	43,428	134,213	118,364	66,955

제 3 장 지방경제 활성화 사례와 자치법규의 문제점

구 분	총 상인수	종사자*				노점상인
		소 계	점포소유 상인	점포임차 상인	종업원	
2010년	359,375	297,809	44,801	128,637	124,371	61,566

*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 종사자, 무급종사자 모두 포함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

<표 6> 연도별 전통시장 · 점포수 · 상인수 비교(2006년 기준 증감)

(단위: 개, 명)

구 분	전체시장수	점포수	상인수
2006	1,610	225,725	352,646
2010	1,517	201,358	359,375
증감률	▽93	▽24,367	△ 6,729

국내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시장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32.7조원에서 2012년 21.1조원으로 7년 사이 35.5% 감소했다. 반면에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그림 1>과 같이 2005년 23.7조원에서 2011년 36.8조원으로 54.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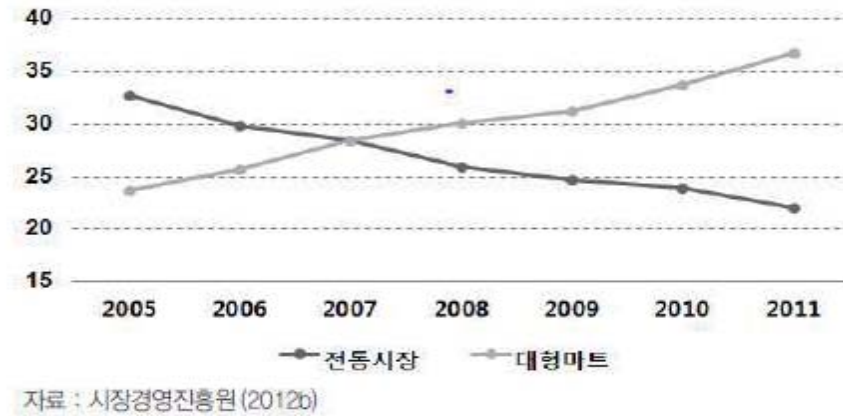
<표 7> 전통시장 연매출 추정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32.7	29.8	26.7	25.9	24.7	24.0	22.1	21.1
전년대비 증감율	-	-8.9	-10.4	-3.0	-4.6	-2.8	-7.9	-4.5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2012)

<그림 1> 전국의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매출규모 추이



전통시장 일매출액이 2005년 33.5만원에서 2010년 대비 19.5% 줄어들었으며,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은 19.3만원으로 2010년 대비 24.0% 감소했다. 대형시장의 수도 크게 감소하여 2005년 32개에서 2012년 18개로 줄어 7년만에 43.8%의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황(86건)

<표 8>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상위법령	자치법규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86건)
2)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106건)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유통산업법(1996)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대형마트, SSM 등 유통업체의 진출과 시장참여가 자유로워지면서 전통시장은 전근대

적인 유통환경과 영세성, 시설 낙후성 등으로 경쟁력을 점점더 상실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사한 명칭을 가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동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 칙, 제2장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 제3장 인 정시장의 인정,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5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8장 시설 물의 운영 및 관리,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서울 시를 포함한 총 86개 조례가 입법되어 있다.

3) 성공사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 한 길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 략은 특히 더하다. 이하에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를 검토한다.

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우림시장은 영세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형적인 골목형 전통시 장으로 시장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으나 2000년 2월부터 상인과 중랑 구청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와 시장매출이 매년 20~30%씩 증가해 오고 있다.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여 화재의 위험 을 예방하였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천막과 노상적치물, 노점상 등을 정비했다. 또한 무료 주차장 운영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림시장의 현대화 사례는 재래시장도 변화하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② 울산 중앙상가(전통골목시장)

울산광역시시의 중앙상가는 전통골목시장으로 일제시대부터 재래시장이 형성되었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쇠퇴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활기를 회복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상가 골목을 정비하였다. 또한 바닥을 화강석으로 포장하고, 돛형의 대형구조물(길이 182m, 폭 8m, 높이 12.5m)을 설치로 시민들이 이용이 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활기를 되찾고 있다.

(2)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104건)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현황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 기업의 87.9%(중소기업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37.7%에 이른다. 현재 자영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폐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 24.6%에 불과하고 전체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이 25%를 차지하는 등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⁵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SSM 등)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 및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준비된 창업을 위해 기업가 정신고취, 대학의 창업요람을 활용하고, 소상공인지원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실패 후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협업화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공동 브랜드·마케팅·시설을 협업화하고 중소기업 통합 물류센터를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자금 및 세금 지원과 지역밀착형 서민형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50) KB경영연구소, 개인사업자 창업·폐업 특성 및 현황, KB경영리포트, 2012. 10. 참조.

<표 9> 소상공인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 체수	중소기업(비중)	2,707.8(99.2)	3,044(99.9)	3,066.5(99.9)	3,122(99.9)
	소상공인(비중)	2,442.8(89.5)	2,675(87.8)	2,685.9(87.5)	2,748.8(87.9)
종사 자수	중소기업(비중)	8,680.7(80.6)	11,467.7(87.7)	11,751(87.7)	12,262.5(86.8)
	소상공인(비중)	4,726.7(43.9)	5,195(39.7)	5,217.9(38.9)	5,333.6(37.7)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현황”, 2012. 12; 통계청(kosis.kr)

<표 10> 소상공인 창업율 및 폐업율

구 분	2001년	2004년	2007년	2009년
창업율	19.4%	15.0%	13.1%	13.7%
폐업율	21.9%	15.3%	9.5%	13.1%

자료 : 전인우(2011. 12), “소상공인의 현황과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현황(104건)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대형 할인마트의 진입과 영업시간, 휴업일수 등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조례가 각 자치단체마다 제정되어 있다. 예로 들면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조례 제3조에서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조례 9조). 또,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조례 제10조 1항).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증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조례 제10조 2항).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조례 제6조),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제11조), 대규모 점포 등록(제13조), 영업시간 제한(제13조의 2), 등록 조건 부과(제14조)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⁵¹⁾

3) 성공사례

①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중 40% 이상 전통시장 점포에서 매출이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2, 4주 일요일) 중 강동·송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점포의 42.0%에서 일평균 매출액과 고객수가 증가하였다. 그 외 일평균 매출액 및 고객수가 5% 이내로 증가한 점포 비율은 17.9%이고, 5~10% 증가한 점포 비율은 13.8%, 특히 10% 이상 증가한 점포의 비율도 10.3%로 조사되었다.⁵²⁾ 입지, 거리 등의 이유로 일평균 매출액 및 고객수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포가 약 55%를 차지하였다.

51) 동 조례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은 구청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2) 김범식,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대한 영향분석, 서울연구원, 2012, 요약문 참조.

② 충남의 성공사례

충청남도는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영업이익율을 소상공인 지역별 통계에서 충남(12.3%), 제주(11.8%), 대전-경기-경북(11.1%) 등의 순서로 월평균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에 있어 필요함에도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던 분야별 사업을 선정하여 도비로 추진해왔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우수 소상공인 발굴 및 소상공인 육성 등을 해왔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교육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지역방문 교육’과 창업준비과정, 세무, 노무 등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교육을 선택하는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⁵³⁾

2. 지역축제 활성화와 자치법규(166건)

(1) 지역축제 현황

지역에서 주제를 가지고 공공의 성격으로 개최되는 여가와 관광 목적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하여 ‘축제’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50여개에 불과하던 지역 축제 개최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169개(1996년-2000년), 176개(2001년-2005년), 187개(2006년-2010년)로 급속하게 증가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전국 축제 수는 758개이며 서울(113개), 경남(85개), 강원(78개) 순서이며 울산(11개)이 가장 적었다. 축제 유형에는 문화예술형(32.7%), 특산물(24.8%), 전통·역사(13.9%) 순을 차지하였다.

53) 오마이뉴스, 2014. 3. 2일자 기사 참조.

<표 11> 2012년 지역별 축제 개최 수

(단위 : 개)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13	39	29	31	14	14	11	73
758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78	51	63	48	38	43	85	2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12년)

(2) 지역축제 지원 정책

중앙정부의 축제지원은 1995년 ‘문화관광축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5년 이천 도자기축제와 통영 한산대첩제를 시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1999년부터는 축제의 품질향상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5개 등급 45개 축제를 선정하고, 6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지역축제는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축제 지원정책 유형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홍보·마케팅, 교육 등 간접적 지원하는 수단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로 관주도로 축제가 운영되어 예산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대부분이다.⁵⁴⁾

(3)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 일자리 창출효과

174개 축제 방문객 1,870만 6,000명의 총 지출액 5,281억 8,800만원을 근거로 산출된 지역축제의 고용효과는 2011년 기준 36,300명으로

54) 한국관광공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용 신규 정책사업 발굴, 2013. 3, 34면 참조.

나타났다.⁵⁵⁾ 지역축제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축제참가자의 자발적 소비지출에 의한 것으로 간접적 고용효과가 훨씬 크고, 대형 국책사업과 비교하여 투입된 비용대비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또한 지역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소득 증대 효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효과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2000년 1,170만명에서 2011년 2,686만명으로 약 2.3배 증가 하였고 문화관광축제 1개당 경제적 효과는 1997년 18억원에서 2008년 267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⁵⁶⁾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여 직접적인 소득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⁵⁷⁾ 그 외에도 축제는 지역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라는 콘텐츠를 통해 나비·곤충 사육농가를 육성하고, ‘나르다(Nareda)’라는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특산품(쌀)과 연계하여 30억원 매출 기록한바 있다.

(4) 지역축제 지원 자치법규 현황(166건)

지방정부는 ‘축제육성 및 지원사업’ 조례를 근거로 축제를 지원한다. 현재 166개의 자치법규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지정되어 있다.⁵⁸⁾ 지역축제 지원 조례는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1조(목적) 제

55) 한국관광공사, 위의 보고서, 15면 참조

56) 한국관광공사, 위의 보고서, 15면 참조

57) 한국관광공사, 위의 보고서, 16면 참조. 예를 들어 강경발효젓갈축제는 2011년 약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금산인삼축제는 인삼 매출이 인삼 엑스포가 개최된 2006년에는 3,000억원까지 증가한 바 있다.

58) 자치법규시스템 <http://www.elis.go.kr/> (2014.09.30.)

2조(정의), 제3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축제를 활성화) 등 축제 지원 목적, 정의, 예산지원,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축제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지방자치단체 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166개)

현재 지방정부는 축제육성 및 지원사업 조례를 근거로 축제를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축제에 추천할 축제를 선정하고 행정을 지원하고 선정되면 중앙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감독한다. 일부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감독하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지 않은 축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 문화관광축제와 동일한 선정방식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⁵⁹⁾

(5) 성공사례

1)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축제는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월에 개최되는데 여행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만명

59) 한국관광공사, 위의 보고서, 37면 참조.

이상이 방문한다. 2003년 축제 방문객 수가 22만명에서 2011년 공식 방문객 수는 144만 8천명, 경제파급효과는 995억원에 달하고 화천군 지역 내총생산(GRDP)이 산천어 축제 개최 이전 연간 6%에서 2003년 축제 개최로 20.1%까지 증가하였다.⁶⁰⁾ 또한 최초로 축제에 상품권을 도입하였고, 축제장과 인근 산농촌지역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천군 전체가 축제장이 되고 있다.⁶¹⁾

2) 함평군 나비 축제

함평은 2012년 나비축제를 12일간 개최하여 총 29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 약 7억6천만원의 입장료 수입과 농·특·축산물 판매장에서 약 1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⁶²⁾ 이는 인구 3만 6천여 명의 8배에 이르고, 지방세의 약 2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함평군의 경우에도 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역 농산물 판매 지원 관련 자치법규

(1) 지역농산물 판매 현황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치단체 또는 그 보다 작은 면, 마을단위,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인들은 스스로 지역의 살길을 찾아야 하는 독자적인 경영과 지역 브랜드 마케팅 시대를 맞고 있다.⁶³⁾

60) 한국관광공사, 위의 보고서, 95면 참조.

61) 산천어축제는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입장료 대신 썰매와 낚시 등 10,000원의 체험료를 받으면서 5천원권 ‘농촌사랑 나눔권’을 주고 있다. ‘농촌사랑 나눔권’은 청정지역인 화천에서 농사지어 생산된 농산물을 선물로 살 수 있는 구매권으로 방문객 중에 농산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나눔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이웃돕기 차원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주변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62) 광주일보, 2012. 5. 15자 기사 참조.

63) 신순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육성전략 실천 프로그램, 안전행정부, 2010. 12, 6면 참조

이런 지역 브랜드의 핵심 기능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 농산물(특산물)의 판매전략이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산물의 개발과 판매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지역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농산산물 직거래 판매방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직매장이 활성화되었고 주로 지역의 비영리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이를 주도하였다. 최근에는 친환경 급식사업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2) 지역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의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만 생산·공급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가·고품질의 지역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 대표상품을 육성하고 소득창출을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특화된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농수산물 지역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점에서 지역차원에서는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특화산업육성, 경쟁력이 강한 농축산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3) 자치법규 현황

지역 농산물 판매와 관련한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과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판매시장 등 관련 업무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 품목, 도매시장인 수, 적정 거래규모, 시장의 규모와 업종 등이 결정된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시장 내 소규모 시장의 난립 등의 문제를 조절한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음성군은 2012년 1월 전국 최초로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⁶⁴⁾ 현재 음성군의 뒤를 이어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충북도청 등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⁶⁵⁾

지 역		조 례
부산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3조, 제4조
대구광역시	-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로컬 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 구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경기도	-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충청남도	-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4) 성공사례

1) 강원도 양구군의 향토자원인 곰취 판매

양구군은 FTA 등으로 인하여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웰빙열풍으로 새로운 향토자원의 개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3년부터 곰취재배를 시작하였다. 마을단위차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브랜드 및 식품개발, 곰취축제의 확대 등을 통해 산채사업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후 양구 곰취 판로의 다양화 및 명품화,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⁶⁶⁾

64) 이를 통해 음성군 농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격안정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65) 프레시안, 2014. 3. 11,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9> 대안유통에서 활로 찾아 기사참조.

66) 곰취재배를 통한 2004년에 2,492명이었던 고용효과는 2007년에는 7,692명으로 3배가 증가하였고, 2004년도에 13억원이던 농가소득이 2007년에는 72억원으로 5.5배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종갑 외 3인, 앞의 보고서, 47면 참조)

2) 장수 사과 명품화 사례

장수군은 사과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 품질 개량과 더불어 장수 사과 캐릭터 상표등록과 조형물 설치, 사과 포장지 개발 및 브랜드 인지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⁶⁷⁾ 이런 노력을 통하여 1995년에 184ha에 불과하던 재배면적이 2008년에는 873ha로 크게 증가하였고 사과 재배 농가수도 1995년에 97 가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544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10ha당 평균 소득은 250만원~400만원 사이로 전체 873ha를 기준으로 보면, 2억 1,825만원~3억 4,920만원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⁶⁸⁾

4. 투자기업유치와 자치법규

(1) 현 황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기업의 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하는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정적 약속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67) 김종갑 외 3인, 앞의 보고서, 49면 참조.

68) 김종갑 외 3인, 앞의 보고서, 50면 참조.

(2) 투자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 재정적 측면

기업의 투자유치에 따른 재정적 장점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유치는 유치기업 자체의 생산과 고용에 따른 직접적 효과와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세수의 증가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아져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셋째, 세수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높일 수 있고, 산업기반의 정비 또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2) 지역경제적 측면

기업의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장점으로서는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 경제에 생산, 소득, 고용, 인구 등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제 경영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이 형성된다.⁶⁹⁾

3) 투자기업유치 자치법규 현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표 13> 지방자치단체 투자기업유치 지원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69) 예를 들면 천안시의 경우에는 천안시청을 중심으로 전방 3km 안에 천안산업단지과 삼성디스플레이시티 등이 조성되어 있다.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투자기업유치 성공사례에서 소개할 군산시의 조례를 별첨에 소개한다.

(3) 성공사례

1) 군산시 사례

군산시는 새만금이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고용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397개 기업, 19조원의 투자액을 유치했고 이에 따라 2006년 7만1,260명이었던 근로자 수가 지난해 9만5,809명으로 늘면서 2만4,549명, 34.4%가 증가했다.⁷⁰⁾ 특히 2008년 10월 54.1%였던 고용률이 2012년 6월 54.9%로 증가하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 0.4%의 두 배 이상 성장 증가율을 보였다. 군산의 기업유치 효과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난 2006년 말 대비 총 1만4,670명이 증가했으며 특히나 기업유치의 영향으로 20~30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8만 명, 2018년경에는 3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⁷¹⁾

2) 전라남도 화순군 기업유치 사례

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태도가 투자기업 유치에 큰 영향을 준 경우이다. 자치단체장이 직접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① 군청에 군정발전 기획단을 신설하고 ② 투자유치,

70) http://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m=n_sokbo&ctg=1105&total_id=7514225 기사 참조.

71) <http://www.daily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387>. 데일리전북, 2012. 3. 2, 기사참조. (2014. 9. 30. 방문)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25명으로 확대하였다. ③ 실·과·소장, 읍·면장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애로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④ 공무원이 기업을 찾아 기업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는 ‘기업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외 기업유치 실적이 뛰어난 직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과감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업유치 노력을 비롯해 신속한 인허가, 산학협력 활성화, 사후 관리 등에서 높은 수를 받아 2010년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⁷²⁾

5. 지역문화자원 활용과 자치법규

(1) 지역문화자원 활용 현황

최근 주5일제 근무의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생활이 확대되고 한류(韓流)의 확산에 따라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광산업은 국가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 문화 자산은 고유가치가 있고 한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⁷³⁾

(2) 지역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문화유산 활용의 성공사례중의 하나로 대구 ‘근대골목투어’사례가 있다. ‘근대골목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72) 부산발전 연구원, 성장정책의 탈출구, 기업유치 확대, BDI 포커스 제87호, 2011. 1. 31, 5면 참조.

73) 김병섭 등, 문화재의 관광적 활용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176면 참조.

도움을 주고 있다.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음식점, 상가 매출이 20~30% 증가했다. ‘은빛순라군’, 골목투어 해설사 운영 등으로 연간 100여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도 발생하였다. 골목투어를 중심으로 하는 북스탬프, 액세서리, 대구 공예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갤러리 핸드아트 등 청년 창업이 이루어졌고, 예술과 함께하는 문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전문 인력의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3) 지역문화재 활용에 관한 자치법규 현황

①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②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③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④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⑤ 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대표적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정) 2005.12.26 조례 제 195호

(일부개정) 2011.06.07 조례 제1042호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이하 “향토문화재”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6.7)

1.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 3 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조사
2.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환정보존에 관한 사항
5. 국가·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 5 조(구 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재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 6 조(회 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 9 조(고 시)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3.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보존) ①구청장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등) ①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문화재 등의 관리·보호·수리·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개정 2011.6.7)

제15조(표창)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4) 성공사례

1) 지역 경제 살리는 대구 근대골목투어

대구시 중구는 외곽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유동인구도 감소하고 이 때문에 상가 경기도 침체하는 상황에서 ‘골목’투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주고 있다. 대구 근대골목투어는 총 5개 코스, 14.61km에 달한다. 허름한 골목은 대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고 골목 구석구석 남아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입혀 답사체험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대구 ‘근대골목투어’이다.⁷⁴⁾ ‘2012 한국관광의 별’ 선정, ‘2013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고, 2013년에는 2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2)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담양 대나무축제

담양 대나무축제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에 선정됐다. 대나무축제는 지역의 대나무를 활용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국내 최대 웰빙관광지인 죽녹원과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을 연계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⁷⁵⁾ 특히 대나무 문화와 가사문화 등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떡갈비와 대통밥, 죽순요리 등 음식문화자원을 통해 타 지역

74) 조달청, 희망센터, 141권, 2014. 3, 6면 참조.

75) http://www.yourstage.com/newsinfo/cultureview.aspx?thread=71376&go_page=91. 2012년 담양군청 보도자료 참조.

축제와는 차별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축제 참여도도 높다.⁷⁶⁾ 지역 특성을 살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녹색문화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제 2 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자치법규의 문제점

1.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의 본질적 한계

(1) 법률적 한계-규제법정주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제는 규제의 본래적 의미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담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더 나아가 법률의 위임이 있

76) 아시아투데이 뉴스, 2011년 12월 29일자 참조.

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은 제5조에서 헌법의 내용을 담아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의 원칙이자 규제의 한계로 작용한다.⁷⁷⁾

(2) 자치사무의 본질적 한계

행정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의 일반적 요건은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②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③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고, ④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⑤ 상위 자치단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⑥ 법령에서 규제사항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위임한 경우 해당 사무는 자치사무이거나 단체위임사무이어야 한다. ⑦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전국적·통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해서는 안된다. ⑧ 조례로 위임하였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⁷⁸⁾ 하지만 전국적 통일적 기준에 의하여 추진하는 행정규제의 경우에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또한 반대로 지방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위 법령에서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율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자율권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로 위임하는 지방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본질적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 인정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77)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는 국민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78) 김수연, 위의 세미나자료집, 20면 참조.

2. 과도한 자치법규 규제

(1) 과도한 자치법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2014년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는 46,824건이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약 192개인 셈이다. 중앙정부의 등록규제보다 3배 이상 많다. 등록된 지방규제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각 부처가 만든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위임규제’ 가운데 조례가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있다.⁷⁹⁾ 부문별로는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규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개발이나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법규의 내용 중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차별적 규제내용이 다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적 규제내용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애요소인지 아니면 필요한 내용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과도한 경쟁제한적 요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문제된다.⁸⁰⁾

1)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① 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②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하는 경우, ③ 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하거나, ④ 기업의 재화, 용역, 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을 형성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79)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2014. 4. 30. 방문)

80) 김진국, 위의 보고서, 요약문 <표2> OECD 경쟁제한 checklist 참조.

2) 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①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②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광고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③ 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 공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일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④ 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3) 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①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체계를 형성하는 경우, ② 공급자에게 생산량, 가격, 판매 또는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 또는 장려하는 경우,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경우이다.

4)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① 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②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 구매자가 효과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이다.

3. 소극적 규제개혁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제정하지 않아 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입법여지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축소되기 때문이다.⁸¹⁾ 상위법령에서 형식적으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할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치법규에서 세부규정을 만들기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법령에서 규제의 완화 또는 강화의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한 경우에 다수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우에 자치법규의 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예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⁸²⁾ 이하에서 소극적 규제개혁이 문제가 된 사례를 분석한다.

(1) 옥외광고물 기준완화 특정구역의 지정 사례⁸³⁾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규정과 동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⁸⁴⁾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개정일인 2011년으로부터 1년~2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 사례이다.

81) 한국비교공법학회, 자치법규 제때 마련 실태진단 및 법제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2013, 109면 이하 참조

82) 한국비교공법학회, 위의 보고서, 110면 참조

83) 한국비교공법학회, 위의 보고서, 93면 이하 참조

8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도지사가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지정 및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사항은 각각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시·군·구 조례 또는 시장 등이 정하거나 고시한 바에 따른다.”고 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2)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규정 사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4항은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어, 공포 후 1년경과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일의 경과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법 개정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된 사례이다.

(3)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사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2010년 6월 8일 개정되었고,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었다. 문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제정일의 시기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는 안전성, 재원과 기술적 능력, 설치할 지역의 적정성 고려 등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사업이 연기되거나 투자에 어려움을 준 사례이다.

4.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 보조금지급의 자율성 제한문제

보조금이란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⁸⁵⁾ 국가가 보조하는 보조금의 관리에

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

관한 일반법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가 있어 보조금 이용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조금의 취소·반환 등은 사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재정법에서는 관련 규정(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을 신설하여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방재정법에서 신설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조례가 존재하더라도 그 관리에 따른 규제적 측면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서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지방세감면의 제한문제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가 있다.⁸⁶⁾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은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지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86)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에 대한 특례와 함께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였고, 감면조례 제정요건을 법제화하였다.⁸⁷⁾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⁸⁸⁾, 지방세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

5. 사례별 문제점

(1)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의 문제점

1) 주차장 설치 등 재래시장 현대화 관련 조례의 미흡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바라는 개선사항으로 시설현대화, 주차장 확장이 중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 중 주차장 확보 시장이 41%,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주차대수 충족률은 44%에 불과하고,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보율은 대도시의 경우 30%, 중소도시는 45%, 읍면지역은 44%에 불과하다.⁸⁹⁾ 정부에서는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연평균 감면액이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조세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 하였다.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감면제외 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감면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89)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02.20, 88면 참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하고 상인자부담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차장확보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⁹⁰⁾ 또한 2006년 4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차장 관리권을 재래시장상인회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⁹¹⁾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개 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⁹²⁾

<표 14> 「주차장사용료감면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자치단체(감면율)	비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90분이내 70%할인)	-
부산광역시	-	미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50%내), 중구(50%내), 달서구(50%내)	-
인천광역시	-	미제정
대전광역시	-	미제정
울산광역시	-	미제정
경기도	오산시(상인회 위탁)	-
강원도	-	미제정
충청북도	진천군(위탁), 제천시(위탁)	-
충청남도	-	미제정

90)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의 보고서, 87면 참조

91)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의 보고서, 87면 참조

9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권고, 2008. 10. 13, 권익위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자치단체(감면율)	비 고
경상북도	경산시(50%내), 김천시(50%내), 상주시(50%), 안동시(1시간 감면), 경주시(위탁)	-
경상남도	김해시(상인회에 주차권 할인판매)	-
전라북도	-	미제정
전라남도	-	미제정
제주도	-	미제정

2)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부족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첫째, 생계형 업종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영업자가 과잉 유발되고 있다. ② 둘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상호 연계 없이 단순히 각 단위 시장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효율성 낮을 수밖에 없다. ③ 셋째, 전통시장·유통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여, 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④ 넷째, 과잉 심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전환 및 전직 지원이 부족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도 미흡하다.⁹³⁾

(2) 지역축제의 문제점

1) 미약한 재정자립도

해외 축제의 경우 스폰서십 유치, 입장권 판매, 부스임대 등 수익 사업을 통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대부분 관 주도 형태로 운영되어 축제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관 주도의 축제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

93)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 2012.09.19, 3-4면 참고.

용에 관한 법률⁹⁴⁾에 의거하여 스폰서십, 입장료 등 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⁹⁵⁾ 또한 정부의 축제정책은 단기적 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축제로드맵 제시가 부족하고 축제 개발도 콘텐츠의 내용보다 타 지역과의 경쟁 심리로 비슷한 축제를 양산하여 비효율적이다.⁹⁶⁾

<표 15> 2012년 문화관광축제 재정자립도 현황

축제명	축제예산 (단위: 백만원)	재정자립도	조직위 구성원	상근직원 유무
보령머드 축제	1,800	17%(입장료 1억7천8백만원, 후원 1억2천만원)	민관합동	유
안동국제탈 춤페스티벌	1,700	35%(입장료 2억원, 자부담 4억원)	민관합동	유
진주유등 남강축제	3,700	38%(입장료 14억원)	민관합동	유
김제 지평선 축제	1,370	0%	민관합동	유
강진청자 문화제	2,000	3.5%(입장료 7천만원)	관 주도	무
화천산천어 축제	2,760	5.4%(후원 1억5천만원)	민관합동	유
문경 찾사발 축제	1,300	0%	관 주도	무

94)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95)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용 신규정책 사업발굴, 2013. 3, 92면 참조.

96) 한국관광공사, 위의 보고서, 94면 참조.

제 3 장 지방경제 활성화 사례와 자치법규의 문제점

축제명	축제예산 (단위: 백만원)	재정자립도	조직위 구성원	상근직원 유무
양양송이 축제	700	0%	관주도	무
천안흥타령 축제	1,700	0%	민관합동	유
강경젓갈 축제	1,030	4.9%(후원 5천만원)	관주도	무
금산인삼 축제	2,300	0%	관주도	무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1,123	0%	관주도	무

출처 : 비엘컴JB문화연구소(2012), 2012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 운영에 대한 분석

2) 지역축제효과의 지속적인 활용 부족

우리의 경우 축제의 63.1%는 축제 종료 후 인력을 감원하거나 조직을 해산하고 있으며, 축제 인력의 근무 일수는 평균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⁹⁷⁾ 관주도 축제의 경우 축제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축제 운영 노하우 전달이 어렵고, 축제 인력의 전문성 축적과 축제의 품질 유지에 한계가 있다.

(3)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의 문제점

1) 명품 지역 농산물의 개발과 전략적 상품마케팅의 필요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발전 유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원인 중 하나가

97) 한국관광공사, 위의 보고서, 93면 참조.

지역을 대표할 명품 특산물의 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유통, 판매하는 구조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많은 지역 농산물이 출시되어 지역농산물의 고부가치성을 높이지 못하고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⁹⁸⁾

2)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지역 농산물의 제공

현재 친환경 인증(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받은 지역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고, 대부분 일반 농산물보다 더 좋은 이미지와 함께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인증제도가 농가를 통해 제대로 이행되고 못하고 그 인증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기관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수많은 밭과 논이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인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모든 논과 밭을 일일이 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⁹⁹⁾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경매 시장 등에 출하될 경우 농약잔류 검사를 전부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조례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4) 투자기업유치 조례의 문제점

투자기업유치의 문제점은 투자기업유치의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¹⁰⁰⁾

98) 쌀의 경우 지역별 브랜드가 약 6000개에 달하고 있어 친환경 농법 도입, 광고 등 각종 차별화 전략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차별성이 거의 없어 브랜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99)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100평 넓이의 밭을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경우 실제로 판매는 1000평 넓이의 밭을 친환경인증을 걸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민과 관리기간이 함께 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00) 해당사례는 부산발전연구원, 앞의 자료, 6-7면 참조.

1) 유치 실패 책임에 따른 공무원 사기저하와 담당공무원의 소극적 태도

- ① A시 사례: 2010년 8월 C사의 축산물 가공처리장을 위한 투자의향서가 접수돼 시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시의원을 설득하고, 조류독감 및 구제역등의 발병경로 연구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으나 조류독감, 구제역, 악취 등의 이유로 주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C사 유치에 실패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던 공무원(담당 과장) 2명을 면장으로 발령하였다.
- ② J시 사례: S사는 J시에 있는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수차례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J시는 관련 산업단지 개발·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분류 번호와 업종이 상이하다며 장기간 허가를 지연했고, 이에 따라 S사는 이전 계획을 포기한 사례이다.

사례의 경우처럼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게 유치실패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다른 공무원들에게 정책 집행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지 않고 법규 및 인허가 규정만을 강조하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 구체화된 투자전략의 부족과 지역경제특화 미흡

I시 사례: 산업단지는 투자 및 기업유치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 및 마케팅 활동으로 국내외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부동산에 외국인 투자의 90%가 집중돼 첨단기업 유치가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이다.¹⁰¹⁾

101) 부산발전연구원, 위의 자료, 7면 사례 참조.

지역에 특정 기업을 유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역의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치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제적 자원, 기업가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대외적 경쟁력이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성공적 지역유치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에 대상 산업의 선정과 산업입지 지역인 개발지역에 대한 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식부족이 장애가 되고 있다.

3) 재정적 지원의 실효성 문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가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¹⁰²⁾ 첫째,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반드시 투자기업유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토지의 면적과 가격, 교통조건, 그리고 고용인원 확보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진출은 반드시 지역 내부의 정규직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비정규직 사원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할 수 있으며 노동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대기업의 진출은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의 부도·폐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주민의 이해와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섯째, 특정의 기업 또는 산업의 과도한 의존은 경기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킨다.¹⁰³⁾ 따라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재정지원이 안이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납세자인 주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높다.

102) 윤현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마련 자치법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회 워크숍자료집, 2014. 4, 34-36면 참조.

103) 한 지역이 어느 산업을 특화하면 경기적 순환에 약해지기 때문에 산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제 4 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제 1 절 자치법규 본질을 고려한 정비방안

1. 자치법규의 위상강화

지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권한확대가 필요하고 법체계상 조례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행정규칙에 불과한 정부의 통합지침이 행정규칙으로 조례의 하위 규범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위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로 위임된 자치사무의 경우 중앙부처의 지침에 구속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규제는 자치사무에서의 규제이고, 지방규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례의 경우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경우만 규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앙부처는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최대한의 영역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도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하여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미흡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에 명시할 필요할 것을 제안한다.

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 분석 강화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 분석을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부처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 산정 등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방규제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p>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p>② - ④ 생략</p>	<p>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u>및 자치단체의 장</u>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3. 지방규제등록 의무화

지방규제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지방의 규제도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규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의 규제등록제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의 규제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규제의 내용과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p>제 6 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 6 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u>및</u> <u>자치단체의 장</u>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 2 절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1. 규제조례 일몰제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대한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기간도래 시 해당부처가 존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일몰제는 과도한 규제나 법령의 역제를 위한 유효한 방법이다. 최근 규제일몰제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어 이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규제일몰제를 확대하여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조례 일몰제는 그 대상을 조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검토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¹⁰⁴⁾ 검토조항은 중앙정부의 법률에 대응한 법시행 조례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제정한 조례나 상황에 따라서 조례 제정시점에서의 입법사실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조례에 규정한다. 검토기간은 4-5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검토를 위한 조직으로 위원회를 두기도 한다.¹⁰⁵⁾ 현재 시행 중인 규제적 조례를 대상으로 ‘재검토조항이 필요한 조례’와 ‘기타 조례’로 구분하여 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각종 허가기준을 규정한 것을 포함. 각종 인허가·신고의무·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조례 등), ②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조례(일정한 행정분야에 정책의 기본적인 계획·시책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2. 규제 등급제의 실시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자치법규상의 규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질의 규제와 그렇지 못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등록규제, 미등록 규제

104) 박영도,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박근혜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 추진 전략 세미나 자료집, 2014. 4. 29, 64면 참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규제일몰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규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사항이 포함된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 산적한 과제나 장래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식 일몰제를 완화한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재검토형(post-implementation reviews) 일몰제로서 검토조항(見直し條項)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05) 최철호, 자치법규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14. 4, 85면 참조.

를 모두 포함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자치법규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과도하거나 소극적인 규제 등을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의 품질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제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¹⁰⁶⁾ 규제 등급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여야 하고, 그 추진방법으로는 중앙정부가 일반적 규제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⁷⁾

3. 지방규제 총량제의 도입

규제 총량제는 일단 규제가 시행되면 이를 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경우, 다른 규제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규제의 총량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고.¹⁰⁸⁾ 지방규제 총량제는 그 대상을 조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그에 따른 비용에 맞먹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⁹⁾

특히, 지방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방규제를 신설할 경우, 그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규제 총량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규제에 대한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규제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 제공할 필요가 있다.¹¹⁰⁾

106) 김현호·박해육,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박근혜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추진 전략 세미나 자료집, 2014. 4. 29, 32면 참조.

107) 김현호·박해육, 위의 발표문, 32-33면 참조.

108) 현대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규제, 2014, 5면.

109)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582> 참조.

110) 김현호·박해육, 위의 발표문, 33면 참조.

제 3 절 소극적 규제개혁에 대한 개선방안

법제처와 전경련에서 2011년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자치법규의 정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자치법규 차원에서 규제완화조치가 미진한 이유는 담당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조치에 대한 정보결여 또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 소관부처의 표준조례제시에 대한 기대로 인한 입법지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¹⁾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중앙정부 소관부처의 표준조례에 의 의존도가 높고, 이는 규제개혁 등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 결여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제도개선 과제의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¹¹²⁾

1. 정보공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정보¹¹³⁾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잦은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과 관련된 지방규제를

111)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의 현황, 문제점, 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정비지원 등 방안, 2011, 153-160면.

112) 한국법제연구원, 위의 보고서, 159면.

113) 예를 들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건폐율·용적률,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면제기준 등

분류하고 이를 반영한 자치법규상의 규제수준을 표시한 규제지도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비교 정보 제공으로서는 미흡하다.¹¹⁴⁾

2. 면책제도 및 감사제도 활용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2009년에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한 개선사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도록 하여 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처리가 반복될 경우 안전행정부 및 시·도 자체감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절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로 지역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기대한 만큼 이익을 얻지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각각의 지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방에게 재정적 지원, 즉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용한 정책수단이지만, 그 부작용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¹¹⁵⁾ 또한 기업의 유치와 관련된 재정적 지

114) 안전행정부,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보도자료, 2013. 12. 13. 참조.

115)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국가에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창의적 연구를 거듭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원은 중앙정부의 법령체계 내에서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규제, 즉 조례 등 자치법규를 통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관련 자치법규 이외의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절 분야별 개선방안

1.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 개선방안

(1) 고객중심의 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요인으로 고객편의 중심의 환경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시설, 도로 확장, 비가림시설(아케이드)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정부지원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도로 확장, 비가림시설(아케이드) 설치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화사업의 추진으로 매출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기존 공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예산으로는 각각의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도 각 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러한 주차장 이용료 감면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어 이러한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대표적 개정방안 사례로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동 조례는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 구리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제2조 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규정, 제3조 주차권의 판매, 제4조 주차요금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두어 구리전통시장 이용고객으로서 수탁관리자가 발급한 확인증을 소지한 자동차에 대한 일부(50%)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 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제6조), 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제8조), 위탁운영 및 위탁의 취소, 수익금 사용, 운영지원,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제10조-18조) 등을 두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주차요금으로 전통시장이용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최초 1시간 까지	1시간 초과 매10분마다	1일 최대	월 정기권
500원(전통시장이용자는 무료)	200원	8,000원	70,000원

그러나 통상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극장이나 공원 등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무료시간과 1일 최대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이용자가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므로 인근 주민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개정안			
최초 2시간 까지	1시간 초과 매10분마다	1일 최대	<삭제>월 정기권
500원(전통시장이 용자는 무료)	200원	2,000원	

(2) 지역 특색을 고려한 활성화 전략과 상인들의 자구노력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요인으로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시장을 특화하였다는 점도 크다. 예컨대, 울산시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점별 특화전문시장’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법제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극 조례 등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이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는 시장 상인들의 노력과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상인 스스로 부족했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인들의 경영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시식회를 개최하거나 식료품을 원산지에서 가져와 원가 그대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인의식교육, 선진시장 견학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는 상인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규정이 없는 조례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예시로 용인시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p><u><신설> 제#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자치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u></p> <p><u><신설> 제#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권활성화사업</u> <u>2. 시설현대화사업</u> <u>3. 경영현대화사업</u> <u>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u>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p>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신설> 제 5 조(상인교육 등)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자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상인들에 대한 교육등을 위해 상인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2.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개선방안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되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담당부서의 존재가 필요하다.¹¹⁶⁾ 지역경제의 주체인 주민참여의 측면에서도 민간참여조직은 필요하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지역축제관련 조례에서 행사에 관련된 모든 절차와 내용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축제추진주체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상급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을 받

116) 예를 들어 화천의 경우 축제 제1회 때 주축이 되었던 민간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재단법인인 나라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축제를 관할하는 화천군의 행정적인 협조를 받아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상급 자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시행할 필요가 있다.¹¹⁷⁾ 또한 축제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어렵고 단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¹¹⁸⁾ 이런 측면에서 재정 독립이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지자체의 행사·축제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통합을 권고하여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고, 지방예산의 절감 점검 항목에 행사·축제경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¹¹⁹⁾ 아직 이러한 규정을 조례로 반영한 자치단체가 매우 미흡하다. 대표적 사례로 문경시의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개정안
제 5 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 5 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u>축제추진위원은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축제의 범시민적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로 위촉한다.</u>

117) 예를 들면 화천군 산천어 축제의 경우 가칭 「화천군 산천어 축제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의 목적과 역할, 지원사항, 수입금의 처리, 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1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 12. 29. 참조.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2007년에 개최된 행사·축제의 집행 예산을 조사한바 있고, 2003년 이후 평균 16.9%정도 증가된 것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관리 대책을 요구한바 있다.

119)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용 신규 정책사업 발굴, 2013, 96면 참조.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개정안
<p>제18조(예산 지원) 시장은 추진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u><신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근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u></p> <p>제1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경비 지출에 대한 간사 전결규정을 둘 수 있다.</p>

3. 지역 농산물 판매 조례 개선방안

(1) 명품 브랜드개발 및 다양한 판매마케팅

지역 경제측면에서 고품질 농산물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강화가 필요하고, 생산과 출하, 판매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지역의 상품과 차별화하는 마케팅 활동과 함께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등과 같은 체계적인 상품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특

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이를 명품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믿을 수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 ②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추진할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나아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유치 조례 개선방안

제조업 유치가 필요하다. 제조업 기반의 기업 유치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국내 지자체 간에 기업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지역의 기업 유치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인구유입효과를 가져와 지역쇠퇴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1) 기업유치 지원시스템의 개선

① 원-스톱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자치단체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지원시스템 운영은 원칙적으로 원-스톱 처리이어야 한다.¹²⁰⁾

120) 군산시의 경우 기업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투자지원과, 향만물류과, 투자유

② one-roof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에 신속지원 및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공사, 코트라 등 투자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여 업체가 일일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¹²¹⁾

③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조직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기업체가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청취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¹²²⁾

(2) 기업지원 조례 개정

투자유치기업 지원조례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¹²³⁾ 또한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인력수급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적소에 제공하여야 한다.¹²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치사업단 등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업유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121)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 전북도, 해양항만청, 상공회의소, 토지공사, KOTRA, GMDAT, 자유무역지역관리원, JAHC, 군산클러스터추진단, 투자유치사업단 등 11개 기관이 모여 협의한다.(김명환,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제도 진단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연구, 안전행정부, 2008. 12, 95면 참조)

122) 군산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건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연 300여 건의 크고 작은 기업애로를 해소시키고 있다.

123) 군산시의 경우 조례로 대규모 투자기업에게는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하였고,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기존기업 증설투자시는 50억원, 국내기업 군산이전 업체에게는 고용, 교육훈련보조금4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제도를 제정·시행하였다.

124) 조승현,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제 15권 제1호, 2011. 4, 269면 참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p>제 3 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p> <p><u><신설> 제#조(지방세 감면) 법 제8 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게는 거창군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u></p> <p><u><신설> 제#조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억 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신설> 제#조 (기업 활동 지원범위 등) 군수는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추진 지원 등</u> <u>2. 우수기업 발굴 등</u> <u>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u>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p>4. <u>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u></p> <p>5. <u>산업인프라 구축지원 등</u></p> <p>6. <u>기타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u></p> <p><신설> 제#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p> <p>① <u>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신설> 제#조(성과급 지원) ① <u>군수는 국내·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등이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원대상 내·외국인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p><u>제#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을 위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u></p> <p><u>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 시장을 1순위로 하는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u></p>

5. 지역문화자원 활용 조례 개선방안

각 지역에 산재하는 지역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를 발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반영하는 네트워크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규정도 요구된다. 각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개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¹²⁵⁾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현행 규정 없음>	<p>제#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향토문화지구의 지정 및 육성규정 신설></p> <p>제#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향토문화관광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p>

125)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웰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약자의 이동과 접근의 편의를 증진하는 정책수립과 시설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p>1. <u>무형·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역문화창출이 가능한 지역</u></p> <p>2. <u>역사성·문화성·설화 등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u></p> <p>3. <u>그 밖에 향토문화계승이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u></p> <p>② <u>문화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④ <u>시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문화지구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⑤ <u>시장은 문화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역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u></p> <p>⑥ <u>문화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문화지구조성사업 착수시에는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p><u><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신설></u> <u>제#조(문화시설 지원) 시장은 시 소</u> <u>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u> <u>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u> <u>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u> <u>수 있다.</u></p> <p><u>제#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u> <u>제천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u> <u>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 예술인이</u> <u>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u> <u>하여야 한다.</u></p> <p><u><지역 문화예술체험 규정 신설></u> <u>제#조(문화예술교육센터) ① 시장은</u> <u>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u> <u>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제</u> <u>천시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u> <u>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u> <u>“교육센터”라 한다)설치할 수 있다.</u> <u>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u> <u>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u> <u>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u> <u>2.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u> <u>그램 개발</u> <u>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u> <u>학술 연구 및 조사</u> <u>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u> <u>성·배치 및 재교육</u> <u>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u> <u>장비의 확충 및 정비</u>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p>6. <u>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u></p> <p>7. <u>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관련사업</u></p> <p>8. <u>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제 5 장 결 론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시민들과의 끝장 토론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의 약 10%를 연내에 폐지하기로 하여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최근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서도 규제 장치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아직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지체하여 법령에서 폐지된 규제를 존치시키기도 하고 지방 공무원들이 집단민원을 의식하거나 감사에 지적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령에 근거도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잘못된 행태와 관행에 따른 규제를 하기도 한다. 이런 조례와 규칙, 일선공무원의 과잉규제로 인하여 경제적 규제를 양산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규제행정의 영역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정책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와 정부자료는 지방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이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었다. 규제행정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자치사무임을 인식, 지방의 자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입법에 위임하는 사무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기준설정, 인허가 등의 조건 완화 등에 불과하여 그 한계가 나타난 이상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지방규제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이므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감독이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방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정책적 수단과 법적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수단이 보다 중요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적 방안으로는 국가차원의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방안이 있다. 문제는 현행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노력은 사실상 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조세에 관한 자주권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법으로 새로운 지역개발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기존의 규제적인 법률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내어서 그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앞장서고 지방이 일사분란하게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의 취지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규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기존의 방식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기홍,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제의 발전, 2012. 6.
- 김수연,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의 역할과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자료집, 2014. 7. 15.
- 김범식,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대한 영향분석, 서울연구원, 2012.
- 김병섭 등, 문화재의 관광적 활용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 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김종갑 외 3인,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행정 안전위원회, 2008. 12.
- 김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 김현호·박해육,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박근혜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추진 전략 세미나 자료집, 2014. 4. 29.
- 박영도,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박근혜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추진 전략 세미나 자료집, 2014. 4. 29.
- 신순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육성전략 실천 프로그램, 안전행정부, 2010. 12.
- 신원득, 이상미,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10. 9.
- 윤현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마련 자치법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4. 4.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저스티스 106호, 한국법학원, 2008.

참고문헌

- 조승현,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
정부학보 제15권 제1호, 2011. 4.
- 최철호, 자치법규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법제연
구원 세미나 자료집, 2014. 4.
- 한광수·박인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3. 6.
- 홍성우·김광구·한상연,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국토
계획 제42권 제7호, 2007.
- 고용노동부, 관광이 지역경제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2012.
-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권고, 2008.10.13. 권익위 보도자료.
-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014. 3. 12,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
2012. 9. 19.
- 부산발전 연구원, 성장정체의 탈출구, 기업유치 확대, BDI 포커스
제87호, 2011. 1. 31.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2. 20.
- 안전행정부, 지방규제완화 3차 보고회의 자료, 2013. 9. 30.
- _____,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보도자료, 2013. 12. 13.
- 조달청, 희망샘터, 141권, 2014. 3.
-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지자체 규제 현황 파악 및 개선체계 구축-중소
기업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2012.

- 중소기업청, 2010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용 신규 정책사업 발굴, 2013. 3.
-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의 현황, 문제점, 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선 방안 연구-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정비지원 등 방안(2011).
- 한국비교공법학회, 자치법규 세대 마련 실태진단 및 법제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201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2013.
- 현대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규제, 2014.
- KB경영연구소, 개인사업자 창업·폐업 특성 및 현황, KB경영리포트, 2012. 10.

부 록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황(86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황(86건)

지 역		조 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북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블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부 록

지 역		조 례
	수성구	전통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인천광역시	동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북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대전광역시	동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남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동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조례
	부천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황(86건)

지 역		조 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강원도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진천군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부 록

지 역		조 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곡성군	기차마을전통시장 내 친환경인증 농·임특산물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양산시	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출처: 규제개혁위원회)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 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양도금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6조	제16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물 설치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제 5 조(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전통시장의 인정시장 인정취소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10조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p> <p>① 市長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p> <p>② 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p>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26조	<p>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市長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p> <p>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p> <p>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市長은 그 내용을 市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市長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인정시장의 기준</p>	<p>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6조</p>	<p>제 6 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p>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전통시장 임시시장의 등록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16조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10조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상점가 육성조례 제25조	<p>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전통시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33조	<p>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경우 2.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12.11.05.)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전통시장 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12조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거제시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市場)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4. 시장(市場)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전통시장등의 임시시장의 등록(공통)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제2항과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p> <p>② 구청장, 상인조직, 시장관리자가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p>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p>② 구청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p>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 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 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고성군주차장조 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 상의 불연재 혹은 난 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 방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 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 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 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① 시장구역으로부 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 여야 한다.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p>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통영시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위탁의 취소</p>	<p>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p>	<p>제 8 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전통시장 편의시설 설치기준</p>	<p>양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2조</p>	<p>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양산시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2. 비 가리개 : 내구년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법을 충족하여야 한다.</p> <p>3. 화장실 : 점포 300개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 또는 공공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한다.</p> <p>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p> <p>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원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p> <p>6. 기타시설 :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p>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 제12조</p>	<p>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 조제5호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 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햇빛가리개 : 내구년수 10 년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 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점포 300개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 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 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 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4. 시장(市場)안의 도로 : 화재발 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미 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 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 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 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6. 기타시설 :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p>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 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p> <p>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 또는 등록된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p>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 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p>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임시시장의 등록취소</p>	<p>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18조</p>	<p>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전통시장 상인회의 등록취소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26조	<p>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 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 하는 경우 3. 개발 등의 사유로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 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 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p>
과태료 부과 기준 (전통시장)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1조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의한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전통시장)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0조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 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 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통시장 편의시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설치기준	조례 제5조	<p>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② 구미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편의시설 설치기준</p>	<p>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p>	<p>제 5 조(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편의시설 설치기준</p>	<p>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p>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평창군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등에 따른다.</p>
<p>전통시장 편의시설 설치기준</p>	<p>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p>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 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김제시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p>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p> <p>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주요시설물등의 관리</p>	<p>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p>	<p>제 4 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p>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p>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김제시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6 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p>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p>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p>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 조제5호에 의한 편의시설은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함양군주차장조 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년수 10년 이 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 치하여야하며, 「건축법」·「소 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공중화장실은 「함양 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에 의거 설치 운영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 또는 공공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한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 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 인정하며 폭원 은 7m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 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6. 기타시설 :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전통시장 및 상점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p>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 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경주시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p>제 9 조(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 ① 관리자는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전통시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p>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p> <p>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市長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 내용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전통시장 관리 수탁자의 의무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 5 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입점상인 및 이용객 등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시설물 변상책임 등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 9 조(변상 책임 등) 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전통시장 관리 위탁의 취소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제 6 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부 록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p>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p>	<p>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정조정위원회의 의 결을 거친 경우
<p>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p>	<p>제 5 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 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사 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 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조사
(출처: 규제개혁위원회)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3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 전 및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 5 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 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 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 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다만, 설 및 추석 명절의 경우 명절 당일은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후 첫 의 무휴업일은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중구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 전 및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 여 다음의 내용을 적용 ①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 전 10시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② 의무휴업일 : 월 2회 / 두번째 일 요일, 네번째 일요일 ③ 위반시 과태료 부과(유통산업발 전법 시행령 19조) - 1차 위반시 : 1,000만원 - 2차 위반시 : 2,000만원 - 3차 위반시 : 3,000만원.
대형마트 건축주에 대한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제 5 조(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형마트 및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권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제5조제7항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남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 9 조(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5.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 설정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지원대상	영양군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조례	-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제6조	-

3.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조례 등록규제조사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소상공인및중 소기업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소상공인및중 소기업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소상공인 용자신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소상공인 희망센터 시설 사용 허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 5 조(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탁 자에게 위탁한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소상공 인 희망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법 및 규제내용	자치법규	해당 조항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의 해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 7 조(위탁의 해제·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상황 지도감독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 8 조(보고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희망센터 자체운영규정 승인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9조	제 9 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화천군 산천어축제 지원 조례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08.13 조례 제21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천어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 체계 구축과 화천산천어 지리적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대표축제의 공익적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 라 하며,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논미로 406-1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마파크”란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양식 및 축양, 그 밖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테마파크의 관리를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테마파크를 화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테마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천어 양식장: 양식동, 종묘배양장, 취수탑, 사료창고 등
2.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당직실, 기자재보관실 등
3. 산천어 홍보시설: 홍보·판매 전시
4. 산천어 체험시설: 야외생태공원, 체험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천어 양식·축양 및 판매
2. 산천어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3. 산천어 향토(가공)식품 연구개발생산 및 전시·판매
4.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테마파크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운영 및 관리

제 6 조(관리·운영) ① 테마파크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테마파크의 관리자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7 조(개관 및 휴관) ① 테마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테마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운영시간)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제 9 조(체험료 등) ①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료 등을 면제한다.

1. 국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② 체험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음주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 3.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테마파크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 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 4.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입장자가 전시품 및 테마파크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테마파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어류양식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어류양식 관련 학계 인사

3.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업무 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테마파크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의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사항
3. 산천어와 산천어 가공식품 판매단가, 테마파크 체험료 등의 결정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위탁관리·운영

제22조(위탁 관리)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보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4조(위탁절차 등) 제22조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5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테마파크 관리·운영 및 추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동산종합보험, 화재보험, 이용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수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⑤ 수탁기관은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함에 따른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27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은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③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세입조치) 수탁기관은 테마파크 위탁 관리·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천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테마파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테마파크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5. 테마파크 관리·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관리·운영한 경우
6. 공익 목적 수행 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수탁기관으로는 정상적인 위탁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관리) ①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지휘·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테마파크 수탁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으로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테마파크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화천군 재무회계규칙」, 「화천군사무의민간 위탁 촉진및관리조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군산시 기업투자유치 지원 조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6.05.10>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06.05.10>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개정 2006.05.10, 2013.01.02>
 -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신설 2006.05.10, 개정 2013.01.02>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신설 2006.05.10>

7.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05.10, 2013.01.02>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2007.01.02, 개정 2013.01.02>
9.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2007.01.02>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신설2007.01.02, 개정 2013.01.02>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승인 업체를 말한다.<신설2007.01.02>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신설2007.01.02>
13. “시내거주자”라 함은 공장착공 신고일 이전부터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2007.01.02, 개정 2013.01.02>
14. “집단화”라 함은 전라북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시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평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은 2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2009.12.29, 개정 2013.01.02>
16.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17.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신설 2007.07.30>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개정 2013.01.02>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개정 2013.01.02>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 2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 2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01.02>
- 23.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01.02>
- 24.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01.02>
- 25.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01.02>
- 26. “신·증설기업 지원”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24호 및 제25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01.02>

제 2 장 투자위원회 등

제 3 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2>

- 1. 군산시의회 의원
 -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 4. 그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 <개정 2013.01.0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이 된다.<개정2007.01.30,2008.02.04>

제 5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1.02>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02>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1.02>

제 6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제 3 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 7 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02>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01.02>

제 8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1.02>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시내 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보조금 <개정 2013.01.02>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밖의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1.02>

제 9 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2.>

제 4 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게는 군산시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7.30, 2013.01.02>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1.02>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1.02>

④ 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군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1.02>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산시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3.01.02>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항상 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01.31, 2006.05.10, 2007.01.02, 2013.01.0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날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05.10., 2007.07.30, 2013.01.02>

제14조의 2(이중지급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01.02>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01.31., 2006.05.10, 2013.01.0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05.10., 2007.07.30, 2013.01.02>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하여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1.02>

1.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13.01.02>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3.01.02>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02>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01.02>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3.01.02>

제 5 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항상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7.01.02, 2007.07.30, 2009.12.29, 2013.01.02>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신설2007.01.02>
2.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신설2007.01.02>

② 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

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2013.01.02>

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4.01.31., 2007.01.02, 2007.07.30, 2009.12.29>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평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2.29, 2013.01.02>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첨단업종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3.01.02>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3.01.02>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07.01.02><삭제 2007.07.30.>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7.01.02, 2007.07.30, 2009.12.29, 2013.01.02>

②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개정 2004.01.31><삭제 2007.07.30>

③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상시 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07.01.02> <단서신설 2007.07.30> <개정 2013.01.02>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시장은 시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제19조의3(신·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범위내 최고 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3.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1회로 한다. 단 신설기업이 3년 이내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19조의5(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의6(기업 활동 지원범위 등) 시장은 군산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추진 지원 등
2. 우수기업 발굴 등
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4.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5. 산업인프라 구축지원 등
6. 기타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 6 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09.12.29>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24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5조 <삭제 2013.01.02>

제26조 <삭제 2013.01.02>

제27조 <삭제 2013.01.02>

제28조 <삭제 2013.01.02>

제29조 <삭제 2013.01.02>

제30조 <삭제 2013.01.02>

제31조 <삭제 2013.01.02.>

제 7 장 보 칙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 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제33조(성과급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등이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4.01.31, 2013.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원대상 내.외국인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0.31, 2004.01.31>

③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결정액의 한도내에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0.31>

제34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시장은 도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을 위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7.01.02, 2013.01.02>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7.01.02>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 시장을 1순위로 하는 저당권 설정 또는 가동기 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2>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2007.01.02>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하였을 때<개정 2007.01.02, 2013.01.02>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1.02>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내에 군산시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2007.01.0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제37조(투자통상자문관 위촉) ① 시장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전문가를 군산시투자통상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01.02 조례제 105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19조의4에 따른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공포한 날 이전에 착공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안분석 2014-02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2014년 8월 11일 印刷

2014년 8월 13일 發行

發行人 이 원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437-1 93360